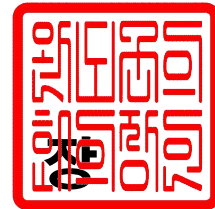


완도군 청년친화도시 구성에 관한 조례안

「완도군 청년친화도시 구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입법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6년 8월 6일

완 도 군 의 회 의



1. 조 례 명 : 완도군 청년친화도시 구성에 관한 조례안

2. 발 의 자 : 조영식 의원

3. 제정이유

- 「청년기본법」 제24조의6에 따라 청년친화도시 구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년의 정책 참여를 확대하고, 청년의 권익 증진과 역량 강화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청년친화도시 조성의 목적, 정의 및 군수의 책무 (안 제1조 ~ 제3조)
- 청년친화도시 조성 원칙 및 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안 제4조 ~ 제6조)
- 정책연구 및 실태조사(안 제7조)
- 청년친화도시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안 제8조)
-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지원, 교육·홍보 및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안 제9조 ~ 제11조)

5. 관련법령 : 「청년기본법」 제24조의6

6. 조례안예고기간 : 2026. 8. 7. ~ 2026. 8. 11.(5일간).

7. 의견제출

- 본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6년 8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완도군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이견과 그 이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 완도군의회 의회사무과(의정지원1팀)

-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청해진남로 48 / (우) 59121

(전화: 061-550-5938, FAX: 061-550-5907)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 전화 · 팩스 · 직접방문 등

8. 기타

○ 자세한 사항은 의회사무과 의정지원1팀(전화: 061-550-593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조례안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서식) 1부.

2. 완도군 청년친화도시 구성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서

조례안 예고명	완도군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견 제출자	성명 (개인/단체)		전화번호	
	주소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				
「완도군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의 조례안 예고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완도군의회의회장 귀하				

완도군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의 정책 및 발전과정에 청년의 참여를 촉진하고, 청년의 권익증진, 역량 강화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완도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을 말한다.
2. “청년정책”이란 「완도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정책을 말한다.
3. “청년친화도시”란 「청년기본법」 제24조의6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적극 발굴·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청년친화도시 조성 원칙) 군수는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청년 개개인의 역량을 강화하고 능동적 삶을 실현할 수 있는 기반 조성
2.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적극적 참여 촉진

3. 교육, 고용, 직업훈련 등에서 청년에게 평등한 기회 제공

4. 청년이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 조성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군수는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청년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해야 한다. 다만, 「완도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 제5조에 따른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었을 경우 그 계획을 청년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으로 본다.

1. 청년친화도시 조성의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

2.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추진전략 및 주요 정책

3.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지원체계 및 민·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자원 조달 및 자원 운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때 청년 및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시행계획 수립 등)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실태조사 등) ① 군수는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책연구 및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정책연구 및 실태조사를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정책연구 및 실태조사 결과를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 및 사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청년친화도시위원회 설치) ① 군수는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완도군 청년친화도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연도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청년친화도시 조성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청년친화도시 조성과 관련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완도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 제8조에 따른 완도군 청년정책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이 경우 완도군 청년정책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제9조(지원) 군수는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교육 및 홍보) 군수는 청년친화도시에 대한 군민의 이해 증진과 인식 확산을 위하여 다양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 군수는 청년친화도시 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